

學校保健 關係法令 分析

金 相 煥 *

An Analysis of School Health Law in Korea

Sang Wook Kim

Abstract

One of the first constitutional challenges to congressional legislation in the area of school health came in 1967.

The ac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for the school health program is within school health act constituted 20 Articles and its regulation of 14 Articles.

This study was reviewed the school health act and its regul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chool health program. The data were collected by 14 Boards of Education from November 1986 to January, 1987.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identified the articles needss to change such as the articles with regard to health education activity, physical assessment activity, criteria of school health environment, control of communicable disease, First-Aid and clinic management by School nurses.

* 文教部 義務教育課

I. 緒論

1. 研究의 必要性

健康의 概念이 점차 변화되어 옴에 따라, 學校保健의 概念도 변화를 거듭해 왔다.

오늘날 學校保健의 궁극적인 목표는, 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完熟된 사람 즉 전전한市民을 양성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哲學을 기반으로, 學生들의 成長과 發達을 잘 파악하고, 전전한 분위기와 생활환경 안에서 완벽한 건강관리와 좋은 保健教育을 이루기 위해서는 教育現場에서 실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法의 根據가 必要하게 된다.

最近, 疾病의 樣相은 物理學的原因, 즉 急性疾病, 傳染性疾病으로부터 社會·文化的인 原因 즉 慢性疾病, 非傳染性疾病으로 변화되어 가고, 社會發展 및 生活環境의 變化로 인한 전장장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經濟가 成長하고 文化水準이 向上되었으며, 食生活의 改善으로 體力이 伸長되었으나, 反面에 肥滿學生의 增加, 異狀體質現狀 등의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學校保健은 이러한 당면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自己變革을 통한 體質改善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이에는 強力한 法의 뒷받침이 要請된다.²⁾

「學校保健法」³⁾은 1967年 3月 30日 法律 제1928호로 공포되었으며, 1977年 7月 23日과 1981年 2月 28일의 2次에 걸친 一部改正이 있었다. 이 法은 제1조에서 “이 法은 學校의 保健管理와 環境衛生淨化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여, 學生 및 教職員의 健康을 保護·增進하게 함으로써, 學校教育의 能率化를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³⁾⁽⁶⁾⁽⁷⁾ 그리고 그 아래, 保健管理를 위하여 養護室 등 保健施設 및 器具의 具備義務(제3조), 身體檢查(제7조)와豫防接種(제10조)을 包含한 學生의 保健管理(제9조) 및 教職員의 保健管理(제13조) 保健管理専門人力인 學校醫(齒科醫包含)와 學校藥師 및 養護教師(제15조), 市道 및 市郡

單位의 學校保健管理機構(제16조)와 文教部學校保健委員會(제17조)의 設置根據를 規定하고 있다. 또, 環境衛生淨化를 위해서 學校環境衛生 및 食品衛生의 雜持義務(제4조)와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設定運用(제5조, 제6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³⁾

「學校保健法 施行令」⁴⁾은 「學校保健法」이 공포된 후 거의 3년이 지난 1969年 12月 25日에야, 대통령령 제4311호로 공포되었고, 1981年 10月 8일에 第3次 改正이 있었다. 이 슈에는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과 文教部에 두는 學校保健委員會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제6조에서 學校醫·學校藥師 및 養護教師의 配置基準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文教部 슈인 「學校保健法 施行規則」이 1970年 9月 1일에 공포되었는데 여기에는 주로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에 관한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1982年에 폐지되었다.

「學校保健法」의 施行規則으로서, 「學校保健施行規則」과는 별도로 「學校身體檢查規則」이 있다. 이 規則은 「學校保健法」이 制定되기 월전 以前인 1951年 3月 10일에 文教部令(제15호)으로 制定되었으며, 「學校保健法」과는 明示的 연결없이 施行되어 왔다.⁶⁾⁽⁷⁾

그러나 「學校保健法」이 身體檢查에 관하여 「教育法」보다 상세하고 적극적인 내용(제2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3조)을 담고 있으며, 學校保健에 관한 法律과 部令 사이에 體系上의 調整도 필요하므로, 「學校保健法」은 제7조 제2항에서 “身體檢查 實施의 時期·方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文教部 슈으로 정한다.”(全文改正 1981年 2月 28日 法律 제3374호)라고 규정 身體檢查가 「學校身體檢查規則」에 의하여 施行되는 것임을 명시하였다.⁶⁾⁽⁷⁾

學校身體檢查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기전강진단과 검사를 요청하는 法 슈으로, 「傳染病 예방법」과 「結核예방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등이 있는데 이는 學生 및 教職員의 結核에 관한 전강진단과 기생충 감염여부 검사 및 치료를 학교장의 의무사항으로 하여, 연 1회 또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傳染病 예방법 시행령」은 매 학년 초에 결핵과 함께, 나병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개방성 환자에 대해서는 취학을 금지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 발생의 신고와 예방 접종 등의 예방조치의무도 명시하고 있다.⁷⁾

「學校保健法」은 「教育法」에 대한 特別法으로서, 「教育法」에 優先하여 적용되는 學校保健의 基本法이라고 할 수 있다.

「教育法」이 學校保健의 人力·施設·事業에 관하여 教育上 필요한 最小限의 基準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學校保健法」은 좀 더 廣範하고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法의 内容과 實踐에 관하여는 많은 비판이 있으며 論議의 여지도 많다고 하겠다.

이 法은 學生의 健康管理와 學校의 環境管理에 관한 基本事項을 정하고 있어 學生의 健康管理 차원이상의 保健教育을 그 規定對象에서 제외시켜 學校에서의 保健education이 여전히 「教育法」에 맡겨져 있음을 보여준다.⁷⁾

한편, 「學校保健法」을 學校保健에 관한 一般法이라고 한다면, 學童들의 營養에 關聯된 特別法으로서 「學校給食法」이 있다. 우리나라 學校給食은 그 歷史가 매우 오래인데 그 性格이 救護的 性格에서 保健的 性格으로 바뀌지는 오래이나, 이에 관한 法令의 整備는 극히 最近에 이루어졌다. 1981年 1月 29日에 法律 제 3356 호로 공포되었고, 그 해 9月에 施行令이 制定되었으며, 이듬해인 1982年 3月 20일의 政府組織法改正에 의해 體育部에 職制가 생김에 따라 文教部에서 體育部로 이관, 1983年에 體育部에서 施行規則을 만들었다.²⁾⁶⁾⁷⁾

學校保健에 있어서의 環境管理와 關聯하여 「學校保健法」은 學校長에서 換氣·採光·照明·便所 등의 環境 및 食品衛生을 適切히維持할義務를 부여하고 있는 바(제 4조), 이러한 施設이나 設備가 그 目的에 맞도록 設置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規定을 담고 있는 法令이 「學校施設·設備基準令」과 「學校教具設備에 관한 規則」이다.²⁾

基準令의 内容 中 學校保健과 結合되는 것을

살펴보면, 校舍의 垂地는 安全·防音·換氣·採光 등에 지장이 없는 立地일 것(제 2조), 校舍는 學習과 保健衛生에 적합한 것으로서 必須施設로 養護室 등의 保健衛生에 관한 各室을 둘 것(제 5조 제 1항), 給食施設과 溫水供給施設 등의 勵獎施設(제 10조) 등이 있다. 또 그 별표 4에는 保健衛生 各室의 基準을 提示하고 있는데, 養護室은 學校當 1室以上으로 校長室·事務室·宿直室 등의 管理用室 등과 兼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學校教具 設備에 關한 規則」에서는 各級 學校別 體育場 設備의 種目, 基準과 各級 學校의 共通인 養護室 設備의 種目 등을 規定하고 있는데 養護室에는 養護設備로서 寢臺 및 寢具와 藥品 및 小器具, 消毒保管函과 함께 各種의 身體檢查 用具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 보건의료에 대한 社會的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이 분야의 制度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세도의 변화는 法令의 재정·개정·폐지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本人은 學校保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한 法的 뒷받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學校保健關係法令의 改正·補完을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하고자 本研究를 試圖하였다.

2. 研究의 目的

本研究의 目的是 바람직한 學校保健法案을 위한 參考資料를 提供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研究 目的을 좀 더 具體的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 學校保健法의 現行 및 이의 問題點을 把握하고 改正案을 作成한다.
- 2) 學校保健法 施行令과 施行規則의 現行 및 의 問題點을 把握하고 改正案을 作成한다.
- 3) 學校身體檢查規則의 現行 및 이의 問題點을 把握하고 改正案을 作成한다.
- 4) 其他 學校保健關係法令의 現行 및 이의 問題點을 把握하고 改正案을 作成한다.

II. 研究의 方法

1. 調查對象 및 期間

本研究의 調査對象은 14 個 市·道 教育委員會이다. 調査期間은 1986年 11月부터 1987년 1月까지 2個月동안 이었다.

2. 調査方法

學校保健關係法令의 改正·補完사항에 관한 질문을 개방식으로 작성하여 14個市·道教育委員會에 공문서식으로 발송하였으며는 각市·道教育委員會에 근무하는 保健係長에 수합되어 공문으로 수집되었다.

3. 資料處理 方法

蒐集된 資料의 分析은 關係法令別로 現行과
改正·補完方向, 改正理由 항목으로 整理하여
分析하였고 이를 각 市道別로 비교하였다.

III 研究結果 與 考察

1. 學校保健法

제 1 조 目的에서 學校保健은 學生 및 教職員의 健康을 保護·增進시키기 위하여 保健管理와 環境衛生淨化에 편요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는데, 여기에 學生 保健教育의 항목을 明文化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표 1 참조)

表 1 <

學校保健法의 現行 및 改正案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第1條(目的) 이 법은 <u>學校의 保健管理와 環境衛生淨化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여 學生 및 教職員의 健康을 保護·增進하게 함으로써</u> 學校 教育의 能率化를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u>學校의 保健管理 環境衛生淨化와 學生 保健敎育에 必要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保健敎育의 必要性이</u> 절실 함 ○ 明文化하여 具體的이고 體系적인 保健敎育이 이루어져야 함.
第2條(定義) 이 法에서 身體検査라 함은 體格検査 및 體能検査를 말한다. (新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體能検査를 <u>體力検査</u>로改正 <p>第2條(定義) ① 이 法에서 말한다.</p> <p>② 이 法에서 “保健管理” 라 함은 <u>學校에서의 保健敎育 健康管理, 學校 環境衛生 등 學生들의 精神的, 具體的 健康增進에 必要한 모든 事項을 統除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2條(定義) <u>體力検査를</u>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學敎身體検査規則 第2條의 内容과</u> 相異함.
第3條(保健施設) 學校의 設立經營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養護室을 設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學校 規模에 따라 養護室 設置面積, 養護에 필요한 器具, 藥品, 身體検査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在 大統領令으로 規定되어 있지 않아 效率的인 學校 保健을 遂行할 수 없음.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監 또는 教育監이 指定하는 者가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나쁜 影響을 주지 않는다고 認定하는 行爲 및 施設은 除外한다.		
1. 環境保全法 第 14 條에 정한 污染物質 非出許容基準을 超過하여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지장을 주는 行爲 및 施設.	1. … 第 2 條 第 12 號에 정한…… 施設로서……	
2. 劇場, 銃砲火藥類의 製造場 및 贯藏所, 壓縮가스, 液化가스의 製造場 및 贯藏所		
3. 屠畜中 火葬場		
4. 汚物蒐集場所		
5. 汚物埋立場, 汚物塵芥燒却場, 垂列기終末處理施設 및 糞尿終末處理施設		
6. 焗獸處理場, 化製場		
7. 傳染病院, 傳染病隔離病舍, 隔離所		
8. 傳染病療養所, 診療所		
9. 家畜市場		
10. 專門飲食店, 各種 遊興飲食店, 簡易酒店,	10. 刪除, 遊興飲食店	
11. 호텔, 旅館, 旅人宿	11. 宿泊業	
12. 公衆沐浴場 ^중 休憩施設	12. 沐浴場業 ^중 特殊沐浴場	
13. 射倅行爲場, 搊球場, 競馬場	13. …… 刪除 ……	
14. 기타 第 1 號 내지 第 13 號와 類似한 行爲 및 施設과 美風良俗을 害하는 行爲 및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行爲 및 施設	14. …… …… 文教部令 …… …… ……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組織機能 및 運營에 관한 事項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및 道知事는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行爲와 施設을 防止하는데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施設의 撤去를 命할 수 있다. ④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및 道知事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③直割市長..... ④直割市長 ○ 禁止行爲 및 施設중 第 1 號 (環境保全法 第 14 條에 定한 汚染物質非出許容基準을 超過하는 行爲 및 施設), 第 7 號 (傳染病院, 傳染病隔離病舍, 隔離所), 第 11 號 (호텔, 旅館, 旅人宿), 第 12 號 (公衆沐浴場중 休憩施設) 및 第 13 號중 撞球場 施設除外改正 ○ 第 6 條 (淨化區域 안에서의 禁止行爲 등) 第 1 項 第 13 號 : 撞球場 削除 ○ 第 6 條 (淨化區域 안에서의 禁止行爲 등) 第 1 項	○ 禁止行爲 및 施設중 第 1 號 및 第 7 號 行爲施設은 關係法 (環境保全法, 傳染病豫防法, 醫療法)에 依處規制하고 있으며, 第 11 號 第 12 號 및 第 13 號중 撞球場 施設의 禁止行爲는 外部에 露出되지 않아 學習 및 學校保健衛生에 나쁜 影響을 주지 아니함. ○ 撞球場은 그 施設이나 行爲 自體가 學校學習 및 保健衛生에 나쁜 影響을 끼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現行法上 高等學校 以下의 學校는 純對淨化區域 안에서도 行爲 制限이 缓和되는 業種으로서 撞球場과 같이 國民들의 健全한 娛樂施設이나 體育施設로 보아 規制對象에서除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思料됨. ○ 學校保健法 第 6 條 第 1 項 14 號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行爲 및 施設이 現在까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p>14號 : 기타 第 1 號 내지…美風良俗을 害하는 行爲 및 施設로서 文教部令 으로 정하는 行爲 및 施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各種 遊興飲食店으로 改正 (大衆飲食店은 例外), 現行 食品衛生法이 隨時로 改正됨 에 따라 廣範圍하게 規定하도록 한다. ○ 成人專用電子遊技場業種 捷 入 ○ 大統領令으로 第 1 내지 第 13號에 規定되어 있지 않은 類似한 行爲 및 施設을 具體 的으로 明文化하도록 한다. 例) 養豚牛舍, 養鷄場 汪油 所(油類販賣業), 가스販賣 業 등 ○ 食品衛生法 施行令 第 9 條 의 營業의 種類에 業種을 一 致 ○ 第 14號 類似行爲 및 施設 制定 要望 ○ 撞球場 削除 	<p>지 정해지지 않아 適用하기 가 애매할 뿐 아니라, 全國 의으로 統一이 되지 않을 경 우 國民들의 財產權과 關聯 된 民願이 蓄起될 소지가 많 早速한 措置가 要望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法 運營上 本 條項에서 規 定하는 禁止行爲 및 施設은 社會가 發展함에 따라 新規 業種의 變化에 伸縮性 있게 對處하기 위해 <u>文教部令</u>으로 制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思料됨. ○ 現行 食品衛生法에는 專門 飲食店과 簡易酒店業種이 없 음. ○ 改正된 遊技場業法에 의하 면 成人만 出入 可能하며 學 習 및 保健衛生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思料됨. ○ 現行 規定되어 있지 않아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管理에 어려움이 많음. ○ 食品衛生法과 學校保健法의 營業의 種類가 一置하지 않 아 業務에 統一을 期하고자 함. ○ 未制定으로 禁止行爲등을 規 制하는데 廣範圍하고 險路事 項이 있음. ○ 成人對象 娛樂으로 學生保 健衛生에 影響이 없으며, 보 울링과 같이 健全한 娛樂 및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電子遊技場을 追加 ○ 清化區域 안에서의 禁止行爲 등 關係條項을 刪除하고 環境保全法, 公演法, 汚物清掃法, 廢水處理, 및 화제장에 관한 法律, 傳染病豫防法, 食品衛生法, 宿泊業法, 公衆衛生法 등 關聯 部處와 協議法令에 學校 와의 距離등을 規制 ○ 關係法令 提示 및 用語 定義 明示 第 14 號 ○ 類似行爲 및 施設 明文化 ○ 第 10 號 食品衛生法에 遊興從事者를 두고 酒類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행위와 노래와 춤 주 및 춤 등을 行하는 営業 ○ 第 1 號 家畜飼育場 (養鷄舍, 豚舍 施設 等) 을 規制할 수 있는 事項을 明示 	<p>體育으로 育成하는 것이 바람직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學校周邊에 電子遊技場이 增加되고 있어 問題 ○ 認許可決定은 市長·郡守가 決定하여야 할 事項인데 마치 教育長이 認許可決定權을 갖고 許可를 하여주지 않는 식으로 民願이 起起됨 (學校保健法 第 6 條 第 1 項 但書) ○ 市·郡 一線擔當者가 奨學士(校長·校監)로서 各種 法令과 關聯되어 清化業務管理에 隘路가 많음. ○ 民願이 認許可申請時 2 個機關(認許可 官廳教育廳 등)以上의 節次를 거쳐야 하는 不便이 있음. ○ 行爲 및 施設에 대한 用語의 定義가 不分明하여 關係法 適用이 暫昧함. ○ 法 適用이 어려움 ○ 學校周邊의 家畜飼育場(養鷄舍, 豚舍施設 등)은 環境保存法에 定한 배출許容基準에는 미치지 않으나 學校의 學習과 保健衛生에 支障을 주는 事例가 많으나 措置規定이 없어 撤去를 拒否하는 경우가 많음.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務總理訓令 第 179 號 (言語司와 關聯된 複合民願處理에 關한 規定 第 2 條 9 號 學校環境衛生淨化地域內의 設置可能與否) ○ 國務總理訓令第 179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內의 審議基準에 의거 建築許可部署에서 審議基準에 따라 處理하고 있음. ○ 建築許可와 關련된 복합民願處理에 關한 規定 第 2 條 (입지 등에 關한 審議) ○ 建築許可部署에서 處理하며, 그 該當事項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 13 號 成人用 電子誤樂室을 規制할 수 있는 事項 明示 ○ 第 14 號 기타 第 1 號 내지 第 13 號과 유사한 行為 및 施設과 美風良俗을 害하는 行為 및 施設을 明確하게 規定 ○ 第 10 號 公衆衛生法에 의한 成人專用 電子유기장業, 사행行爲場, 당子場, 競馬場 廢 止 ○ 審議基準에 의거 建築許可部署에서 處理한 事項을 즉시 主管部署에서 通報할 수 있도록 함. ○ 建築許可部署에서 處理하고 主管部署에 通報하여야 하며, 그 該當事項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學校周邊의 電子誤樂室은 學校 學生生活指導上 問題가 많음 ○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가 없음 ○ 青少年用 電子유기場業의 變態營業防止 ○ 非電門家인 建察許可부서에서 審議基準未熟으로 위하業所 亂立과 民願을 加重시키고 있음. ○ 學校保健法이 상위법으로서의 제기능發揮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活成化) ○ 建築許可部署에서 處理한 事項을 主管部署에서 즉시 把握하여 淨化區域管理에 注力 ○ 部署間 協調가 원활하지 못하여 行政의 非能率化 ○ 建築許可와 關련하여 處理된 事項을 把握치 못하고 淨化對象物 管理에 어려움이 있음.
第 7 條 (身體檢查) ① 學校의長은 每年 學生과 教職員에 대하여 身體檢查를 實施하여야 한다. 다만, 教職員에 대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p>한 身體檢查는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 第 29 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으로 이에 잘 응할 수 있다.</p>		
<p>② 身體檢查實施의 時期, 方法 및 節次等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文敎部令으로 정한다.</p>		
<p>第8條(登校中止) 學校의 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查의 결과 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되었다는 嫌疑가 있거나, 感染될 우려가 있는 學生 및 敎職員에 대하여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校를 中止시킬 수 있다.</p>	<p>○ 第8條(登校中止) 學校의 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查의 結果 및 그의 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p>	
<p>第9條(學生의 保健管理) 學校의 長은 學生의 體位向上營養管理, 疾病의 治療와 豫防 등을 위하여 필요한 指導를 하여야 한다.</p>		
<p>第10條(同前) 國民學校의 長은 學生이 새로 入學한 날로부터 90日 以内에 傳染病豫防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豫防接種完了 與否를 檢查하여야 한다.</p>	<p>第10條(同前)豫防接種完了 與否를 確認하여야 한다.</p>	
<p>第11條(同前) ① 學校의 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查의 결과 疾病에 感染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學生에 대하여 疾病의 治療 및 豫防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學校의 長은 第1項의 措置를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保健所長의 協調를 求할 수</p>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있으며 保健所장은 정당한理由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第 12 條 <削除> 第 13 條 (教職員의 保健管理) 學校의 長은 第 7 條의 規定에 의한 身體検査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疾病의 治療 · 勤務條件의 改善等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 14 條 (疾病의 預防) 監督廳의 長은 傳染病豫防과 學校保健에 필요한 때에는 當該學校의 休業을 命할 수 있으며 學校의 長은 필요한 때에 休業할 수 있다. 第 14 條의 2 (傳染病豫防接種의 施行) 서울特別市長 · 釜山市長 또는 市 · 邑 · 面長이 傳染病豫防法 第 11 條 및 第 12 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의 學生 또는 教職員에게 傳染病의 定期 또는 臨時豫防接種을 實施함에 있어서는 당해 學校의 學校醫 또는 養護教師 (看護員免許를 가진 者에 限한다)에게 委託하여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養護教師에 대하여는 醫療法 第 25 條 第 1 項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77.7.23 法 3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學校長은 學校保健運營의 주체로서 所信을 가지고 業務를 推進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줘야 함에도 現行法으로는 保健官署의 一方的인 위촉으로 學校長과 養護教師의 士氣를 低下시킬 우려가 있고, 行政區域 및 行政制度의 改編에 따른 保健管轄機關의 变동으로 現行法上의 모순점이 있음. ○ 第 14 條의 2 (傳染病豫防接種의 施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直轄市長 養護教師 (看護員免許를 가진 者에 限한다)에게 行하게 할 수 있다. ○ 이를 適用하지 아니하며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接種에 따른 責任은 市長 · 郡守에게 있다. ○ 學校養護教師는 學校內 應急患者 應急措置 및 傷崩者 ○ 職務範圍를 明確히 하고 책임 한계를 規程하여야 함 ○ 農 · 漁村 保健醫療를 위한 特別措置法施行令 第 14 條의 保健診療員의 業務範圍를 學校內에서 養護教師가 할 수 있도록 法令化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p>第 15 條 (學校醫·學校藥師 및 養護教師)</p> <p>學校에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學生 및 教職員의 保健管理를 담당하는 學校醫 (齒科醫를 포함한다) 學校教師 및 養護教師를 둔다.</p>	<p>선별 및 身體檢查, 健康事情 등을 실시하여 異常者를 병의 원에 移送할 수 있도록 改正</p> <p>○ 第 15 條 (學校醫·學校藥師 및 養護教師)</p> <p>.....</p> <p>... 學校醫, <u>齒科醫</u></p> <p>.....</p>	
<p>第 16 條 (保健機構의 設置等)</p> <p>서울特別市·釜山市 및 道教育委員會와 市·郡의 教育長所屬下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校保健管理에 필요한 機構 및 公務員을 둘 수 있다.</p>	<p>○ 第 16 條 (保健機構의 設置 등)直轄市 및</p>	
<p>第 17 條 (學校保健委員會)</p> <p>① 學校保健의 重要施設을 審議하기 위하여 文教部에 學校保健委員會를 둔다.</p> <p>② 學校保健委員會는 學校保健에 經驗이 있는 15人以内의 委員으로 構成한다.</p> <p>③ 學校保健委員會의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 第 17 條 (學校保健委員會)</p> <p>① 學校保健의 重要施設을 審議하기 위하여 文教部, 特別直轄市, 道教育委員會 및 初·中·高等學校 (이에 準하는 各級學校를 포함한다)에 學校保健委員會를 둔다.</p>	
<p>第 18 條 (經費補助) 政府는 第 7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查에 所要되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한다.</p>		
<p>第 19 條 (罰則) 第 6 條第 1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以下の懲役 또는 1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 20 條 (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附 則</p> <p>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學校에 있어서의 保健教育은 健康의 維持와 增進에 必要한 保健의 基本的인 概念을 習得시켜, 自己의 健康問題는 自己自身이 判斷하고 處理할 수 있는 能力과 態度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4,10)}

그러기 위해서는 國民學校와 中高等學校의 全 教育過程을 通해서 체계적인 保健教育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學校保健法의 目的에 保健教育 항목을 明文化시켜서 실질적인 保健education이 法의 근거하에 實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學校保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學生의 保健education인데, 現在는 정규교육과정에 삽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또 담임교사나 타교사의 결강시 결강보강 형식으로 實施하기 때문에 保健education은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保健education에 대한 強力한 行政의 뒷 받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8,13)}

第 2 條 定義에서는 體能檢查라는 용어를 體力檢查로 改正하자는 의견과, 學校保健의 目的에서 언급된 保健管理의 용어를 건강의 개념에 상응하도록 포괄적으로 定義하여 新設조항으로 삽입하자는 견해가 있었다.(표 1 참조)

第 3 條 保健施設에 관한 조항에서는 그 基準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現在 大統領令으로 規定되어 있지 않아서 效率的인 學校保健을 遂行할 수 없기 때문에 學校 規模에 따라 養護室의 施設 및 器具등을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第 4 條 學校環境衛生 및 食品衛生을 適切히 維持하기 위한 基準을 文教部令으로 規定하여 學校保健management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第 5 條에서는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設定을 學校 境界線으로부터 200m를 超過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를 100m로 改正하자는 의견과 이에 필요한 事項을 大統領令이 아닌 文教部令으로 정하자는 改正案이 있었다.

第 6 條 淨化區域안에서의 禁止行爲 조항에서는 10號 專門飲食店, 簡易酒店은 削除하고 遊興飲食店으로만 하자는 案과 11號 호ôtel 旅館, 旅人宿을 宿泊業이라고 통칭하여 改正하자는 의견

이 있었고, 12號 公衆沐浴場 중 休憩施設項目을 沐浴場業 중 特殊沐浴場으로 改正해야 된다는 案과 第 13 條에서 搞球場을 削除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밖에도 第 14 條에서 ……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行爲 및 施設을 文教部令으로 規定하기를 제안했으며, 16 條項에서는 특히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인 事項은 표 1과 같다.

第 7 條 身體檢查에 대한 改正 및 補完案은 없었으며 第 8 條 登校中止項目에서는 學校의 長은 第 7 條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查의 결과…로 되어있는 現行法을 身體檢查의 결과 및 그외…로 改正하자는 案이 있었다. 이는 學校에서 實施하는 身體檢查의 結果로 나타나는 傳染病뿐만 아니라 평소에 건강사정이나 관찰, 검사등으로 나타난 傳染病에 대해서도 登校中止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第 9 條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第 10 條의 項日에서 …豫防接種完了 與否를 檢查하여야 한다는 용어를 …… 與否를 確認하여야 한다라고 改正할 것을 요구했다.

第 11 條, 12 條, 13 條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고, 第 14 條의 2 傳染病豫防接種의 施行에서 學校長이 學校保健運營의 주체로서 所信을 가지고 業務를 推進할 수 있도록 “…豫防接種을 實施함에 있어서는 學校의 長은 當該地域保健官署와 協議하여…로 改正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학교 養護教師는 學校內 救急患者 應急措置 및 傷病者 선별 및 身體檢查 健康查定등을 실시하여 異常者를 병·의원에 移送할 수 있도록 改正하자는 案이 나왔는데 이는 學校保健전체 속에서 一次保健醫療를 담당하는 養護教師의 職務를 명확히 기술하고 더 나아가 전문가와의 職務의 관계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시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第 15 條에는 …學校醫(齒科醫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를 …學校醫, 齒科醫…라고 명시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第 17 條는 學校保健委員會에 관한 條項인데 이를 文教部에만 두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文教部, 特別市, 直轄市, 道教育委員會 및 初·中·高等學校(이에 準하는 各級學校를 포함한

다)에 學校保健委員會를 둔다.”라고 명시하자는 案이 나왔다.(표1 참조)

2. 學校保健法 施行令 및 施行規則

1) 學校保健法 施行令

먼저 제 2 조의 末에 규정되는 학교의 법위에서 유치원을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는데, 이는 제 3 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규정에 있어서도 유치원을 제외하자는 改正案이 지배적이었다.

改正理由로서 유치원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 인가시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절한 곳에 인가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현행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범위는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범위가 획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의 경우 정화구역내 정화대상물을 규제항에 있어 필요이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유아교육 정책에도 많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 역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까지로 축소하자는 改正案과 정화구역 설정 권한이 교육 구청장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협의사항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제 4 조의 그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설치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 소속하게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를 두고 교육 위원회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학교환경위생 정화 위원회는 두지 않기로 改正하자는案이 있었다.

제 5 조 정화의 요청 조항에는 제 2 항을 新設하여 ②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요청의 절차는 문교부령으로 정하며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6개월이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제 6 조 학교의 학교약사 및 양호교사 배치에 관한 規定에 教育法 施行令 第 38 條(養護教師)에서 ……두어야 한다라는 용어와 일치되게 ……둔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로 改正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教育法施行令」이 “두어야 한다”거나 “둘 수 있다”와 같이 義務를 지우기나 許容해 주는 積極的인 表現을 쓰고 있는데比하여 「學校保健法施行令」은 그저 “養護教師” 1人을 둔다”는 準則의 提示에 그치고 있어서 서로간의衝突을 다소 피하고 있는 듯하나 한가지 사항에 대하여 두가지 基準이 存在한다는 것은 問題가 없을 수 없다.

제 7 조 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에서는 “…문교부위원회장은 문교부 차관이 되고 특별시, 직할시 및 도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초·중·고등학교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改正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제 13 조 등교중지 조항에서는 “…이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결석처리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결석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기타 부칙에 따른 개정·보완사항은 <表2-1>을 참조하기 바란다.

<表2-1>

學校保健法 施行令의 現行 및 改正案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제 1 조(목적)이 영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p>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가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 시장 칙령시장 또는 도지사 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교육위원회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 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 설정일자와 설정구역을 공고 하여야 한다.</p>	<p><u>이 경우 유치원은 제외한다.</u></p> <p>② 삭제</p> <p>③ 삭제</p> <p><u>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정 화구역은 학교설립 인가와 동 시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u></p> <p>① 법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는 상대정화구 역만을 설정하여 관리한다.)</p> <p>② 교육위원회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교지내에 2개 이상의 학교가 있는 경우는 1개교만 설정, 공고한다)</p> <p>○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주 시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범위는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범위가 획일적이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의 경우 정화구역내 정화대 상물을 규제함에 있어 필요이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유아교육 정책에도 많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 학교보건법 제 5 조, 동법시 행령 제 2 조 및 제 3 조에 의하면 교육법 제 81 조에 규정한 모든 학교에 대하여 정화구역을 설정, 공고토록 되어 있으나 같은 교지내에 2개 이상의 학교가 있는 경우 동일한 정화구역을 중복하여 설정 공고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협의사항이 명백하지 않으며, 교육장과 도지사간에 협의는 곤란함. ○ 학교설립후 협의는 의미가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제 3조의 2 (정화구역의 관리) <p>①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p> <p>② 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는 그 중복된 구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에서의 정화구역 ○ 학교시설촉진법 제 5조항 12호에 학교부지 확장 동시에 정화구역 설정 험기한 것으로 개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까지”로 축소하고, 절대정화구역은 폐지하되 “학교총입문으로부터 지선거리 50미터 까지의 통학로 노면은 금지 행위시설을 할 수 없음으로 개정 ○ 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도 관한 위임 ○ 제 3조의 2 (정화구역의 관리) <p>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으며, 학교설립과정에서 사전 협의하여야 함이 타당함 ○ 현재 유치원의 경우 설립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유아교육 시책에 부응하여 설립요건 완화로 많은 유치원이 인가되고 거의가 2~3학급으로 도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일반학교와 같이 정화구역을 설정하므로서 도시발전의 저해요인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많음 ○ 학교부지 확정후 건물 및 출입문이 설정되는 시간이 1~2년 걸리는 경우도 있음으로 이 기간내의 유해업종 신설방지 ○ 학교부지의 유지증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최소지역에 정화구역을 설정함이 타당. ○ 정화구역 설정권한이 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협의사항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한다.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p>1. 상·하급 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나마,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 삭제</p> <p>2. 같은 급의 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p> <p>③ 학교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p> <p>제 4 조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 6 조제 1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이라 함은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정화구역안에서 법 제 6 조제 1 항제 13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 을 말한다.</p>	<p>1 상급학교</p> <p>○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 삭제</p> <p>○ 제 4 조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상대정화구역을 말한다.</p> <p>제 4 조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 6 조제 1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을 말한다.</p> <p>○ 고등학교를 중학교로 개정</p> <p>○ 유치원의 절대정화구역에서 도 “ 호텔 ”, 여관, 여인숙 공중목욕장중 휴게시설 ”은 상대정화구역과 같이 심의위원회로 개정</p>	<p>○ 교육법 제 81 조의 규정에의 한 각학교 중 유치원을 제외할 경우</p> <p>○ 당구장 시설을 규제대상에 서 제외할 경우 () 속의 단서 규정은 삭제</p> <p>○ 유기장업법에 규정된 사항 만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고 사료됨.</p> <p>○ 유치원증설 빙침에 따라 상가 및 주거지역 기존업자가 있는 경우가 많음으로 연령 및 학습시간과 영업시간이 각각 다르므로 원화하여도 무방</p>
		- 79 -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p>제 4 조의 2 (학교환경위생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환경위생정책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책위원회를 두고, 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부교육감(부교육감이 없는 교육위원회는 학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교육위원회 소속직원 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증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p> <p>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정책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⑤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⑥ 위원의 임기 및 기타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p> <p>①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당해 시·군·구의 학교환경위생정책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 소속하에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정한다.</p>	<p>○ 학교환경위생정책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책위원회를 두고, <u>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학교환경위생정책위원회는 두지 않기로 개정</u></p>	<p>○ 학교보건법시행령 제 5조 (정책의 요청) 제 14조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책구역의 설정 금지 행위 또는 시설의 정화요청 권한 등 학교환경위생정책업무에 관한 사항이 시, 군, 구교육장에게 위임되어, 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정책위원회는 실제로 심의 처리할 사항이 없는 바, 심의처리할 사항이 없는 위원회 설치는 부당하다고 사료됨.</p>
제 5 조 (정책의 요청) 교육구	○ 제 5 조 (정책의 요청)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고등학교에는 학교의 1인 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9학급 미만 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 또는 학교약사 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 <u>두어야 한다.</u>	
3. 대학(대학에 있어서 단과대학) 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는 학교의 1인 및 학교약사 1인을 둔다.<개정 74.7.11 대령 7185>	3.	
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유치원 및 각 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해당학교에 준하여 학교의 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4.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u>두어야 한다.</u> (2) 학교의 치과의 학교약사는 각각	○ 교육법시행령 제38조(양호교사)에는 양호교사 18학급
제 7 조 (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위원회(이	○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교육법시행령의 양호교사 배치기준을 일치 ○ 교육법시행령 제38조(양호교사, 제40조 3항, 제43조 3항을 학교 보건법시행령 제6조와 같이 통합운영 ○ 교육법 시행령 제38조, 40조 3항, 43조 3항과 동일하게 일원화시키고, ○ 학교의(치과의), 학교약사, 양호교사의 직무범위를 문교부령으로 위임 제정 제 7 조 (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위원회(이	○ 교육법 시행령과 학교보건 시행령이 상이함으로 양호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규정과 교육법 시행령의 규정불일치로 교원 정원확보 지장 있음.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p>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문교부체육국장, 보건사회부보건국장 및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72.2.2. 대령 5956></p>	<p>하 “위원장”라 한다)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문교부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u>특별시, 직할시 및 도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부교육감이 없는 시 도교육위원회는 학무국장)</u>이 되고 초·중·고등학교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를 포함)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당해 소속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교부는 <u>보통교육국장, 보건사회부보건국장 및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자</u>. 2. <u>특별시, 직할시 및 도교육위원회는 학무국장, 초등, 중등, 과학기술과장, 사회체육과장 및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자</u>. 3. <u>학교는 교감, 주임교사 및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자</u>. 	
<p>제 8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p>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p>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 9 조의 2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p> <p>③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속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p> <p>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p> <p>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 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74.7.11 대령 7195]</p>		
<p>제 9 조의 3 (전문가의 의견)</p> <p>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74.7.11 대령 7195]</p>		
<p>제 10 조 (수당과 여비) 문교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 11 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p> <p>② 간사와 서기는 문교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p>		
<p>제 11 조의 2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p>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p>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 12조 (협조요청) 문교부장관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 13 조 (등교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전염병예방법 제 2 조에 규정된 전염병환자. 다만 제 3 종 전염병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p> <p>2. 제 1 호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p> <p>② 학교의 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p>	<p>○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다. <u>이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결석처리 하지 않는다.</u></p>	<p>○ 결석처리에 따른 문제점 대두</p>
제 14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p>교육위원회의 정화구역 설정 권한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구청장 또는 시·군교육장에게 이를 위임한다.</p> <p>(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및 도지사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방지조치권한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위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영 제 3조제 2항 ' 협의사항을 교육구청장 또는 시·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설정 권한은 교육구청장 또는 시·군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협의사항은 위임되어 있지 않음.
<p>부 칙</p> <p>①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 (종전의 정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 공고된 정화구역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정화구역으로 조정,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 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것으로 본다.</p> <p>③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허가된 시설로서 법제 6조제 1항제 1호 내지 제 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1986년 8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거나 법제 6조 제 1항의 단서의 동 기한까지 이전 폐쇄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영 행전에 허가된 시설로서 법제 6조제 1항제 1호 내지 제 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기득권을 인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영 시행전에 허가된 시설은 이미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사유재산 침해 및 보상문제가 야기되므로 기득권을 인정 성격학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現 行	改 正 補 完 方 向	改 正 理 由
<p>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동 기한 만료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정화구역 설정권자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또는 폐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안에 있는 시설중 법제6조제1항제2호·제4호·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시설은 이 영에 의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1972.2.2 대통령령제 595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1974.7.1 대통령령제 719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1981.10.8 대통령령제 1048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영 시행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유흥음식점은 금지시설에서 제외도록 완화되어 유해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보완조치 ○ 이전 폐쇄시설에 대한 경비 보상에 대해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부칙 3항으로 인하여 민원발생 다발 ○ 사유재산권보호 및 민원 방지

2) 學校保健法 施行規則

文教部令으로 1970년에 制定된 學校保健法 施行規則은 1979년에 5차 改正을 하였으나 1982년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같은해에 학교보건관계 직원의 직무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었는데, 本調査에서는 <表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學校保健法 施行規則을 新設하여 유사금지행위 및 시설등을 규정하고 정화 구역 설정 정화의 요청, 학생 병리 검사등에 따

른 제반 사항은 明文化할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1조 목적 조항 다음으로 제2조에 학교보건 관계 직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학교의 (치과의 포함), 학교약사, 양호교사 및 학교담임교사의 학교보건에 관한 직무의 범위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제3조에는 학교양호실 시설 및 의료장비기준을 명시하여 學校保健의一部를 차지하고 있는 學生健康管理의 效率化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表2-2 참조>

<표 2-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현행 및 개정안

현 행	개 정 보 완 사 항	개 정 이 유
(新 設)	<p>○ 제정요망</p> <p>[유사금지행위 및 시설 등]</p> <p>법 제6조1항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 하는 행위 및 시설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극장 2. 가스판매영업소 3. 주유소 4. 고물영업법시행령 제 3조제 1항 제 15호의 철물류영업소 5. 안마시술소 6. 당구장 7. 성인용 전자유기장 <p>[정화구역 설정]</p> <p>법제 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 구 역의 설정시는 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 과 당해 학교의 장이 개교일로부터 1 개월내에 고시한후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화구역 지적도 2. 정화구역 지번일람표 <p>[정화의 요청]</p> <p>정화구역 관리학교장은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당 해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에게 정화 요청한다.</p> <p>[학생병리검사]</p> <p>학교의 장은 법제 7조 및 9조에 의 한 학생신체의 질병 조기발견, 예방, 간이치료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 여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생충란 검사 	<p>○ 학교보건행정 세부지침</p> <p>사항</p>

현 행	개 정 보 완 사 항	개 정 이 유
	<p>2. 혈액형 검사 3. 결핵 검사 4. 뇨 검사 5. 구강 검사 6. 심장검진</p> <p>○ 시행령에 따른 세부시행사항 규정 ○ 학교 보건관계직원의 직무규정 신설 ○ 법제 14 조의 2 규정에 의한 업무수수행에 필요한 양호시설 및 장비기준설정(별첨)</p> <p>제 1 조(목적) 이영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학교보건관계직원의 직무) 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치과의 포함), 학교약사, 양호교사 및 학급담임교사의 학교보건에 관한 직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①학교의(치과의 포함)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있어 필요한 의견을 발표하고 지도 조언한다. 2. 학교환경위생의 유지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약사와 협력하여 지도 조언한다. 3. 매년 정기적인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진단(치아검사 포함)한다. 4.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치아질병 포함) 및 보건지도를 행한다. 5. 학생 및 예방에 관한 필요한 지도조언을 행하고 학교내의 전염병 및 식중독의 예방처치를 한다. 6. 전염병의 예방에 관한 필요한 지도조언을 행하고 학교내의 전염병 및 식중독의 예방처치를 한다. 7.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구급처리를 행한다. 	<p>○ 보건관계직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업무한계가 불명확</p> <p>○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발표</p>

현 행	개 정 보 완 사 항	개 정 이 유
	<p>8.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 및 지도를 행한다.</p> <p>②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있어 필요한 의견을 발표하고 지도 조언 한다. 2.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독불, 극물과 보건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도 조언을 행하고 그 필요에 따라 시험 검사 또는 감정을 행할 수 있다. 3.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 및 지도를 행한다. ③양호교사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보건관리계획의 수립 2.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및 개선에 유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조언하여 환경위생검사에 협조 3.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신체검사등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관찰검사 4. 교내에서 발생하는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약품 투여 5. 각종 질병예방처치 및 예방접종 처치 및 예방접종 실시 6. 학생기생충구제, 결핵검진 구강 검사, 신체검사등 보건 관리 7. 신체허약, 신체특이자 및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관리 8. 양호실설비, 비품의 정비 및 집무집행에 필요한 기구, 의약품등의 관리 9. 학교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 기록, 확보, 정비로 학급담임교사 및 체육주임교사의 보건교육에 협조 	

현 행	개 정 보 완 사 항	가 정 이 유										
	<p>④ 학급담임교사는 학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학교보건 위생관리의 기초적 담당자로서 보건에 관한 직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의 건강유지증진에 유의하여 발육, 건강상태를 항상 파악하여 적절한 보건지도를 행하며 질병이상자를 발견할 시는 건강상담을 받게 하는등 조치 2. 학교 보건계획을 학생에게 전달하고 보호자와 협력체계 유지 3. 교실등의 청결, 환기, 채광, 조명, 보온등 환경위생의 유지개선에 노력하고 학생의 신체의복의 청결검사 4. 신체검사준비와 실시후 보호자에게 연락등 필요한 조치 <p>제 3조 (학교양호실시설 및 의료장비 기준) ①법제 14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 수행하기 위한 양호실의 시설 및 의료장비 기준은 별표와 같다.</p> <p>(기준)</p> <p>학교 양호실시설 및 의료장비 기준</p> <p>1. 시설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기 준</th></tr> </thead> <tbody> <tr> <td>양호실의 기 준</td><td>전평 66 m²이상</td></tr> <tr> <td>처 치 실</td><td>의료기구장, 진찰통, 들것, 칸막이, 대야, 반침대, 사각병대, 진료의자, 각 1개 이상 약품장 1개이상 유발 및 유봉 각 2개이상, 증기 소독장치 및 소독약품등 기자재와 소독용기재 기구</td></tr> <tr> <td>안 정 실</td><td>침대 4개이상</td></tr> <tr> <td>상 담 실</td><td>상담의자, 책상, 대기용 안락의자</td></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양호실의 기 준	전평 66 m ² 이상	처 치 실	의료기구장, 진찰통, 들것, 칸막이, 대야, 반침대, 사각병대, 진료의자, 각 1개 이상 약품장 1개이상 유발 및 유봉 각 2개이상, 증기 소독장치 및 소독약품등 기자재와 소독용기재 기구	안 정 실	침대 4개이상	상 담 실	상담의자, 책상, 대기용 안락의자	
구 분	기 준											
양호실의 기 준	전평 66 m ² 이상											
처 치 실	의료기구장, 진찰통, 들것, 칸막이, 대야, 반침대, 사각병대, 진료의자, 각 1개 이상 약품장 1개이상 유발 및 유봉 각 2개이상, 증기 소독장치 및 소독약품등 기자재와 소독용기재 기구											
안 정 실	침대 4개이상											
상 담 실	상담의자, 책상, 대기용 안락의자											

현 행	개 정 보 완 사 항			개 정 이 유
2. 의료장비기준				
품 목	규	격	수량	
개 구 기	프라스틱제	상인용	1	
		소아용	1	
시력검사표	프라스틱제	280 mm× 540 mm	1	
수은혈압계	탁상용		1	
혈 암 계	아네로이드		1	
청 진 기	라이트 웨이트형		1	
체 온 계	구강용(35 ℃~42 ℃) 항문용(")		6	
관장셋 트	관장용			
	관장튜브 20 호, 22 인치		2	
	28 호, 20 인치		2	
위 세 척 장	프라스틱(레이빈) 12 호 16 호		1	
	깔대기부착(세척분)		1	
	고무 30 호			
존 대	외과용 127 mm		1	
받 드	205 mm×305 mm×55 mm (대)		2	
	127 mm×325 mm×51 mm (중)		2	
지불소독기	전기용		1	
고압멸균기	100 볼트, 1,000 왓트		1	
	300 mm×150 mm×200 mm			
진 촬 대	1,800 mm×600 mm × 600 mm		1	
꺼 즈 통	180 mm×150 mm		2	
농 반	245 mm×100 mm 45 mm(대)		2	
	215 mm×90 mm × 112 mm(중)		2	
스폰지 통	115 mm×123 mm(대)		1	
	90 mm×112 mm(중)		1	
변 기			1	
요도카테타	고무(넬락톤) 10호 12호 18호			

현 행	개 정 보 완 사 항		개 정 이 유
	품 목	규 격	수량
핀 셋	직 5 1/2 인치 (중) 직 10 인치 (대)		
스폰지감자	직 9 1/2 인치		
모스키 톨 지	곡 5 인치		
감 자	직 6 인치		
소독용감자	유구 7 인치		
조직 감자	유구 5 1/2 인치		
수 흙 칠 손 찹 이	3 호 4 호	1 1	
타 진 기	2 인치	1	
지 침 기	직 6 인치	2	
링 젤 대	높이 2,000 ■■	1	
던 도 기	직	1	
봉대 가위	직 5 1/2 인치	1	
가이제가위	직 8 1/2 인치	1	
수술가위	곡 5 1/2 인치	1	
줄 자		1	
체 중 기	유아용 (그릇병) 성인용	1 1	
약 스푼		2	
냉 장 고	전기용 60 ■■	1	
비 널 갈 개	폭 910 ■■	3	
알코올램프	소	1	
면봉대 (월)	127 ■■	5	
아이스백		2	
핫 백		2	
부 독	2 인치 × 3 인치 × 15 인치 2 인치 × 30 인치	2	
벼 개	환자용	1	
팔 벼 개	주사용	1	
회전전등	포켓용	1	
설 압 자	철	3	
신 장 기	유아용	1	
구 급 냉		1	
비 대 (소독용)		2	
멸균장갑		2	
주사기통	대	1	

현 행	개 정 보 완 사 항			개 정 이 유
	품 목	규 격	수량	
주사바늘통	대		1	
주 사 기	30CC		1	
	10 CC		1	
	5 CC		5	
	2 CC		5	
과 주 장 사 용 기	50 CC		1	
봉 합 친	직 (피부용)		2	
	곡 (조직용)		2	

3. 學校身體檢查規則

學校身體檢查規則에 대하여 가장 많이 논의된 내용은, 체질검사 및 질병유무 검사를 1차로 양호교사가 실시하고 그중 이상자에 대하여는 2차로 학교 촉탁의로서 검시케 하자는 의견이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체검사중 체질검사는 많은 학생들을 하루에 의사 1명이 실시하므로 학동이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교의를 초빙하는 문제도 시골학교인 경우 초청할 교의가 인접한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도시의 경우는 개업의 등을 초청할 경우 병원을 비워 놓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므로 어떤 방법

으로든지 현행 신체검사의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여 양호교사의 역할로 수렴되는 방향으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현재 개선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양호교사에 의한 일차건강사정(Health Agree-nning)을 수업에 지장없이 한반씩 실시한 후 여기에서 발견 아동을 의사나 병원에 의뢰하는 세도인데 이는 여러가지 의미로 계속 발전 정착시켜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이밖에도 신체검사 실시후 그 결과를 학생 체질검사 통계표의 서식에 의거하여 보고케 함으로써 학교보건의 효율성을 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표 3 참조)

<表 3>

學校身體檢查規則의 現行 및 改正案

현 행	개 정 보 완 사 항	개 정 이 유
제 3 조 ①학교신체검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매년 4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실시하되 체격검사와 체력검사는 학교직원, 학교양호교사로서 이를 검시케 하고 체질검사 및 질병유무는 학교 촉탁의사로서 이를 검	제 3 조 ①학교신체검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매년 4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실시하되 체격검사와 체력검사는 학교직원, 양호교사로서 이를 검시케 하고 체질검사 및 질병유무는 1 차로 양호교사가 실시케하고 건강	

현 행	개정 보완사항	개정 이유
<p>사케 한다. 다만 체력검사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p> <p>②학교축탁의사가 없을 때에는 학교축탁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할 때에는 해당지구 보건의사 또는 임시축탁의사로서 이를 검사케 할 수 있다.</p>	<p>이상자에 대하여는 학교 축탁의사가 정밀검사토록 한다. 다만, 체력검사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p> <p>②학교축탁이 어렵거나 교의가 체질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양호교사가 이를 실시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및 양호교사가 신체검사, 체력검사를 할 수 있는 점과 유사하게 양호교사가 건강사정을 하여 이상하다고 판정되는 자를 교의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 ○ 체질검사 및 질병유무는 1차 양호교사가 실시하고 그중 이상자에 대하여는 2차로 학교 축탁의로써 검사케 한다. ○ 학교신체검사는 체질검사는 양호교사가 1차 선별 검사를 하고 이상자는 학교의가 전문적 검진을 한다. 다만, 체력검사는 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 학교 양호교사 및 학교의가 없을 때는 해당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정학교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실정상 학교 의사위촉이 어렵거나 많은 수의 학생을 한정된 시간내에 검사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함으로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함. ○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의 보건진료원의 업무범위를 학교내 양호교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p>많은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함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할 우려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탁의사(학교의)에 의한 전교생 검진이 현실적 어려움 수반 ○ 학교보건요원의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 체력검사 업무 이관 문교부 → 체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의 조치 ○ 지역에 따라 1인의 의사

현 행	개정 보완사항	개정 이유
	이 시시하되	가 다학교 교의로 충분히 촉진되어 일정기간에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없음. ○ 교의 흔자서 많은 학생을 단기간내에 실시하기 어려움 ○ 교의 위축이 곤란한 경우 등은 학교보건협회 기능을 강화시켜 년중 순회실시 할 수 있도록 함.
	<u>양호교사 추가</u>	○ 농촌, 도시 벼지지역에서는 교의를 위축하기 어려우며, 수당등의 비현실성으로 형식적인 검사가 되고 있음. ○ 양호교사에게도 건강사정 법 연수등으로 검사권한 부여
제 4 조 ① 기타의 질병과 이 상 기관능력, 심장, 신장 ② 제 1 항에 제기한 항목외도 학교총탁의사가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 조 ① 기타의 질병과 심 장, 신장 ② 학교의가 없는 경우 양호 교사는 경우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조정	제 4 조 ① 기타의 질병과 심 장, 신장 ② 양호교사가 없고 의료기관 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조치 가 곤란할 경우
제 5 조 13. 이는 <u>삭은이에</u> 대하여 · 검사하고..... <u>삭은이의</u>	제 5 조 13. 이는 <u>우식치아에</u> 대하여 · 검사하고..... <u>우식치아</u> ○ m를 c로 개정 ○ 삭은이는 삭은이 보유학 생을 기입하나. ○ 별지 4 호서식의 최근에 ○ 별지 4 호서식의 최근에	○ c로 측정 기록함이 편리 함. ○ 통계상 삭은이수를 기록 하는것 보다 보유학생수를 기록하는데 더 의미가 많 음. ○ 교의가 전체학생을 진찰
제 11 조 3 항 신체검사 실시		

현 행	개 정 보 완 사 항	개 정 이 유
별지 4 호서식 보고	없는 질병 및 통계의 현실 성 감안하여 조성 (별지 4 호서식 별첨)	검사할 수 없는 실정임으 로 현실적 통계 가능양식 으로 조정
(별지 제 4 호서식)		
분류기호 :		
수 신 :	학 생 체 질 검 사 통 계 표	
참 조 :		
	연 령	살 살 살 살 살 살 계
약 시 (弱視)		
굴 절 이 상	양 눈 0.2 미만 근 시	
	0.7 이 하 원 시	
	0.8 ~ 0.9 난 시	
	색 신 도 라 코 오 마	
눈 병	그 밖의 눈 병	
듣 는 장 애		
귀 병	청력 장 애 중 이 염	
	그 밖의 귀 병	
코 및 목	비 질 환	
	인 후 질 환 후 동 증	
	편도선 비 대	
	선 양 증 식 증	
피 부	전염성, 피부염	
	그 밖의 피부 병	
이	삭은이 치료 한 것 치료 안 한 것	
	그 밖의 이 병	

현 행	개정 보완사항				개정 이유			
	연령	살	살	살	살	살	살	계
그 밖 의 신 체 이 상 및 질 병	결핵성명							
	신장질환 전병							
	간장질환 黠막염							
	심장질환							
	빈혈							
	뇌뇨병 각기							
	탈장							
	팔다리운동장애 신경쇠약							
	언어장애							
	정신장애							
구경관련의이상								
기타나질병 팔다리후드증								
요양호자수								
점사인원수								
<p>주의사항 : 1. 약시(弱視)는 양쪽 눈의 시력이 0.2가 되지 않는 것을 적을 것</p> <p>2. 국민학교 제2학년 이하의 아동 및 유치원의 유아는 약시 굴절이상 색신 및 듣는 힘을 이 표에 적지 말 것</p> <p>3. 삭은이가 있는 학생으로서 특히 치료가 된 것은 그 수를 뒷음표 속에 적 것</p> <p>4. 기타 신체이상과 질병란에 적은 병이름 외의 것이 있을 때에는 빈칸에 적을 것</p> <p>5. 이 표에 기입할 항목 중 그 일부를 점사하지 않는 학생은 이 통계에서 제외하고 기입할 것</p> <p>6. 외국인에 대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기입하지 말 것</p> <p>7. 규격 8 절지</p>								

4. 其他 學校保健關係法令

먼저 교육법시행령 제 38 조를 “모든 학교에 양호교사 1인을 둔다”라고改正하여 양호교사 정원확보 및 효율적인 학교보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학교시설 촉진법에서는 개 5 조를 학교부지가 확정될 때 주변 200미터는 학교보건법으로 협의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간주하도록 법령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 제 5 조에서 양호실을 관리용실등과 겸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단독사용으로 改正하여 학교보건 업무의 효율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타 학교보건법 및 旣施行令을 新設하여 학교보건협회 설치근거를 명문화하고 학교 병리검사 실시근거 및 기관지정 사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表4 참조)

<表4>

其他 學校保健關係法令의 現行 및 改正案

판례법령	현 행	개정 보완사항	개정 이유
교육법시행령	<p>제 38 조 (양호교사) 18 학급 이상의 국민학교에는 양호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무의 촌에 있어서는 18 학급 미만의 경우에도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p> <p>제 40 조 (교원) ① 중학교에는 교장, 교감 외에 3 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배치하고, 3 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 학급을 증가할 때마다 1 인반 이상의 비율로 이를 증치한다.</p> <p>② 제 1 항의 교사 외에 3 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증치한다.</p> <p>③ 특수한 기술을 담당하는 교사(이하 “특수교사”라 칭한다)와 양호교사는 전 2 항의 정원 외에 이를 둘 수 있다.</p> <p>제 43 조 (교원) ① 고등학교에는 교장, 교감 외에 3 인을 배치하고, 3 학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교에 양호교사 1인을 둔다. 	<p>○ 학교보건법과 상이하여 양호교사 정원확보 및 효율적인 학교보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음.</p>

관계법령	현 행	개정 보완사항	개정 이유
	<p>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배치하고,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을 증가한 때마다 2인이상의 비율로 이를 증치한다.</p> <p>②제 1항의 교사 외에 3학급까지는 1인 (실업고등학교에 있어서는 3인)의 3학급을 초과 할 때에는 3학급마다 1인 (실업고등학교에 있어서는 2인)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증치한다.</p> <p>③누수교사와 양호교사는 제 1항 및 제 2항의 정원외에 이를 둘 수 있다.</p>		
학교시설 측 진법	제 5조 학교시설부지 확정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토이용 관계법등 11개 관계법이 협의 승인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학교부지 확정되면 주변 200미터는 학교보건법으로 협의된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간주하도록 법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부지 확정후 건물 및 출입문이 설정되는 기간이 1~2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기간 내의 유해시설 규제
학교시설설비 기준령	제 5조 (별표 4) 양호실 학교당 1실 이상 다만, 관리용실 등과 겸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당 1실 이상을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학급 이하는 33㎡ • 18학급 이상은 66㎡ 다만, 학급수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실 단독사용으로 양호업무 기능 발휘 양호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위생시설로 별도 구획되어 약품, 기구보관 및 치료를 요하므로 관리실과 겸용은 불가함.
학교보건법 및 동운행령	(新 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학교보건협회 설치근거 명문화 필요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 인가기관의 육성 및 기능 활성화로 학교보건관련사업을 포괄적으로 담당케 하므로써 학교보건의 발전도모(예: 신체검사, 보건요원교육, 보건교육자료 개발,

관계 법령	현 행	개정 보완 사유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학교 병리검사 실시근거 및 기관지정사항 명문화 필요함</u> 	<p>보급 등)</p> <p>○ 법령의 명문화 없이 행정지시만으로는 예산 확보등 추진상 어려움이 많음.</p> <p>○ 결핵협회, 기생충 박멸 협회 등은 관련법령에 설치근거 명문화되어 있음.</p>

N. 要約 및 結論

本研究의 目的은 바람직한 學校保健法案을 모색하기 위한 參考資料를 提供하는 데에 있다.

調査對象은 14個市·道 教育委員會를 對象으로 1986年 11月부터 1987년 1월까지 2個月동안 學校保健關係法의 改正·補完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개방식 설문지를 공문서 발송을 통하여 資料를 수집하였고 이를 關係法令別 市道別로 現行 및 改正·補完方向과 改正理由를 整理·分析하였다.

本研究에서 얻은 主要 結果 및 結論은 다음과 같다.

1. 學校保健法

제 1조 目的에 保健教育의 内容을 明文化하는 의견이 있었고 제 2조에는 體能検査라는 용어를 體力検査로 改正하자는 案이었고, 제 3조는 現在 그 基準이 規定되어 있지 않은 保健施設에 관한 規定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第 6條 済화區域안에서의 禁止行爲 조항에서 제 13호의 撞球場을 削除하자는 案이 나왔으며 제 8조 登校中止項目은 신체검사 결과뿐 아니라 평소에 건강사정이나 관찰등으로 나타난 傳染病에 대해서도 登校中止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第 1條에서는 학교 養護教師가 學校內 救急患者 應急指置 및 傷病者 선별 및 身體検査, 健康查定등을 실시하여 異常者를 병·의원에 移送할 수 있도록 改正하자는 案이 나왔다. 第 17 條는

學校保健委員會를 文教部만이 아닌 特別市 直轄市 道教育委員會 및 初·中·高等學校에까지 둘 수 있도록 明示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2. 學校保健法 施行令 및 施行規則

먼저 學校保健法 施行令에서 제2조의 학교 범위에서 유치원을 제외하자는 의견과 제 3조 학교환경위생정책구역 설정의 규정에서도 유치원을 제외시키자는 改正案이 대부분이었다.

이밖에도 제 6조 規定에서 養護教師를 둔다는 용어가 두어야 한다라는 용어로 改正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마지막으로 제 13조 등교중지 조항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결석처리를 하지 않도록 규정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學校保健法 施行規則에서는 이 法을 다시 新設하여 그 内容으로 유사금지 행위 및 시설등을 규정하고 정화구역 설정, 정화의 요청, 학생병리검사등에 따른 제반사항을 明文化할 것과 학교보건 관계 직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학교의(치과의 포함), 학교 약사, 양호교사 및 학급담임교사의 학교보건에 관한 직무의 범위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밖에도 학교 양호실 시설 및 의료장비 기준을 명시하여 학교보건의 일부사업인 보건봉사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3. 學校身體検査規則

學校身體検査規則에 대한 의견은 체질검사 및 질병유무에 대한 의견은 체질검사 및 질병유무

에 관한 검사를 1차로 양호교사가 실시하고 그 중 이상자에 한하여 2차로 학교 촉탁의가 검사할 수 있도록 法的 조처를 하자는 案이 대부분이었다.

4. 其他 學校保健關係法令

먼저 교육법 시행령 제 38 조를 “모든 학교에 ……”라고改正할 것과 학교시설축진법에서는 제 5조를 학교부지가 확정될 때 주변 200 미터는 학교보건법으로 협의된 학교 환경 위생 성화구역으로 간주하도록 法令化 할 것을 제안했으며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제 5조는 양호실을 他 편리승설등과 겸용할 수 없도록改正할 것이며 기타 학교보건법 및 동시행령을 신설하여 학교보건협회 설치근거를 명문화 하고 학교병리검사 실시 근거 및 기관지정 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參 考 文 獻

1. 金命鶴 : 學校保健의 改善案, 大韓醫學協會誌, Vol. 21, No. 3, March, pp. 167~168, 1978.

2. 尹鍾德 : 學校保健法磨 및 組織, 學校一次保健醫療事業強化研鑽會報告書,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pp. 57~67, 1985.
3. 文教部 : 學校保健法, 文教法典
4. 文教部 : 學校保健法施行令, 文教法典
5. 金周成 : 學校保健의 歷史的 考察, 學校保健學概論, 1974.
6. 金花中 : 學校保健과 看護, 壽文社, pp. 36~39, 1984.
7. 박노예 : 學校 養護教師의 役割과 이의 수행상의 問題點, 學校一次保健醫療事業強化研鑽會報告書,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pp. 74~80, 1985.
8. 金正根 : 學校保健을 위한 一次保健醫療의導入, 學校一次保健醫療事業研鑽會報告書,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pp. 27~32, 1985.
9. 김모임, 김매실, 이정자 : 初·中·高等學校教育에 健康教育過程 설정을 위한 基礎研究, 大韓看護, Vol. 15, No. 2, pp. 20~35.
10. 任在恩 : 學校保健教育 向上을 위한 基礎研究, 保健學論集, 제 36 호, pp. 109~114, 1984.